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29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전재수·이재관·이학영

이성윤 • 김재원 • 임오경

김정호 • 박정하 • 민형배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 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, 변경,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,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.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

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, 보험자가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못하도록 하는 한편,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).

법률 제 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험대리상은"을 "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보험대리상의"를 "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보험대리상이"를 "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"로 한다.

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"重要한 事項"을 "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사항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제651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646조의2 및 제6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

체결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6조의2(보험대리상 등의 권	제646조의2(보험대리상 등의 권
한) ① <u>보험대리상은</u> 다음 각	한) ① 보험대리상 및 「보험
호의 권한이 있다.	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
	<u>사는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	②
는 <u>보험대리상의</u> 제1항 각 호	<u>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</u>
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	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
있다. 다만, 보험자는 그러한	
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	
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	
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	③ 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
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	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
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	<u> 가</u>
하는 자는 제1항제1호(보험자	
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	
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	
한다)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第651條(告知義務違反으로 因む	第651條(告知義務違反으로 因む
契約解止) 保險契約當時에 保	契約解止) ①
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	
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	

重要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,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內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. 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第651條의2(書面에 의한 質問의效力)保險者가 書面으로 質問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推定한다.

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
②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
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
항하지 못한다.
<u><</u> 삭 제>